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운영 및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1장 운영 및 구성

1. 설치 및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 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는 선거일 전 120일¹⁾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써, 역대 7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9일까지 150일 동안 운영됐다.

◎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황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2008. 5. 9.	2008. 4. 9.	

2. 구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

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 한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및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 천 단 체	비 고
위 원 장	변 화 석	변 호 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 병 국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위 원	노 향 기	전 월간말 발행인	한국기자협회 (언론인단체)	
	김 현 일	전 뉴욕중앙일보 편집국장	한나라당	2008. 1. 28. 사퇴
	서 옥 식	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	한나라당	2008. 2. 15. 위촉
	김 영 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단체)	
	박 영 규	전 연합통신 논설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조 중 근	공선협 집행위원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시민단체)	
	백 선 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김 영 성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3. 기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 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1.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전문 모니터요원과 실무팀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모니터하여 상정한 안전을 심의,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심의위원회는 위 결정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이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기간행물의 선거 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²⁾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의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

2) 단,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

